

서울고등법원

제 2 5 민 사 부

결 정

사건	2008라545 장부 등 열람등사허용 가치분
신청인,항고인	A
피신청인,상대방	B 주식회사
제1심결정	춘천지방법원 2008. 2. 20.자 2007카합259 결정

주 문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및 항 고 취 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0일간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춘천시 C 소재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보관기간 중 위 장부 및 서류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 보관장소에서 채무자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가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위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총발행주식의 40%인 18,320주를 가진 주주로서, 2007. 7. 23.경 피신청인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태에는 ①2005년도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②2006년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③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중요재산인 춘천시 D, E 소재 옥물 가공공장 대지 및 건물의 헐값 매각, ④허위의 광물생산보고서 제출, ⑤주주에 대한 미 배당 등의 사유가 있어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서, 준비서면, 항고이유서 등이 피신청인에게 제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나. 이 사건의 경우, ①신청인과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표이사인 F 사이에 2001.경부터 수십 건의 민형사사건이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는 점, ②신청인이 주장하는 주주총회의 미개최가 회계장부열람·등사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위 옥물가공공장 대지 및 건물을 헐값에 매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광물생산보고서를 송부한 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는 점, ⑤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와 목적이 경합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는 점, ⑥주주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배당할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어 신청인 소유인 피신청인 회사 주식 18,320주 전부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7타채491호로 주식압류명령을 받았고, 2008. 9. 24. 위 법원 2008타채134호로 위 압류된 주식을 금 616,724,48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신청인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명령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 법원

2008라71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에 계속중인 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의 증거확보 등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피신청인 회사를 압박함으로써 신청인과의 금전채무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거나 또는 신청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결과를 경영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신청인은 주식회사 G가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경영에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경영에 이용할 우려가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G는 아직 해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인 사실이 소명될 뿐이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열람·등사 청구는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7.

판사 김병운(재판장) 심태규 구자현

별 지

목록

(목록 삭제)